

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

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5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2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위탁기관 지정 목적

-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2조제3항, 제10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9항, 제100조의2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·관리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, 발급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함

2. 위탁기관

- 기관명: (사)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

3. 위탁업무의 내용

-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

○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, 발급 및 관리

4. 위탁기관 지정 기간

○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